

발송번호: 9-5-2020-063929816
발송일자: 2020.09.16.

수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57, 2층(역삼동, 중평빌딩)(특허법인우인)
특허법인우인[양승식] 귀하(귀중)
06246

YOUR INVENTION PARTNER

특 허 청
특허결정서

출원인 성명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특허고객번호: 220050095099)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신촌동, 연세대학교)
대리인 명칭 특허법인우인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57, 2층(역삼동, 중평빌딩)(특허법인우인)
지정된변리사 양승식 외 1명

발명자 성명 박상현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신촌동)
발명자 성명 진민화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신촌동)
발명자 성명 성한승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신촌동)
발명자 성명 최원기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신촌동)

출원번호 10-2018-0146224
발명의명칭 스냅샷을 이용한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처리 방법
청구항 수 12

이 출원에 대하여 특허법 제66조에 따라 특허결정합니다.
(특허권은 특허료를 납부하여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설정등록을 받음으로써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특허법 제67조의2제2항에 따라 이 출원에 대한 종전 거절결정(2020.07.23)은 재심사 청구로 인하여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끝.

[참고문헌]

1. KR1020170129959 A
2. KR1020160121819 A
3. KR1020170045928 A
4. 김도영 및 박상현, “비휘발성 메모리를 이용하여 데이터 영속성을 유지한 인 메모리 키-값 데이터베이스”,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pp 140-142, 2018.6 1부.
5. In memory dictionary Redis 소개, <https://bcho.tistory.com/654> (2014. 1. 24.) 1부.

번호	보정항목	보정위치	보정전내용	보정사유	도면보정
----	------	------	-------	------	------

[직권보정 사항]	보정후내용		내용
1 청구범위 청구항 9	<p>프로세서, 메모리, 및 블록 디바이스를 포함하며, 상기 블록 디바이스는 텍스트 파일 형식의 임시 로그 파일을 생성하며,</p> <p>상기 임시 로그 파일을 생성하면,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메모리의 로그 버퍼로부터 플러싱하는 저장 위치를 기억하는 로그 파일 서술자가 상기 임시 로그 파일을 가리키도록 설정하며,</p> <p>상기 임시 로그 파일을 가리키도록 설정하면, 상기 블록 디바이스는 바이너리 파일 형식의 임시 스냅샷 파일을 생성하며,</p> <p><u>상기</u>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는 상기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 기록되는 로그 파일과 상기 바이너리 파일 형식으로 기록되는 스냅샷 파일을 각각 저장하고 관리하며, 상기 메모리의 로그 버퍼로부터 상기 블록 디바이스로 기 설정된 단위 시간마다 주기적으로 플러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p> <p>프로세서, 메모리, 및 블록 디바이스를 포함하며, 상기 블록 디바이스는 텍스트 파일 형식의 임시 로그 파일을 생성하며,</p> <p>상기 임시 로그 파일을 생성하면, 상기 프로세서는 상기 메모리의 로그 버퍼로부터 플러싱하는 저장 위치를 기억하는 로그 파일 서술자가 상기 임시 로그 파일을 가리키도록 설정하며,</p> <p>상기 임시 로그 파일을 가리키도록 설정하면, 상기 블록 디바이스는 바이너리 파일 형식의 임시 스냅샷 파일을 생성하며,</p> <p>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는 상기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 기록되는 로그 파일과 상기 바이너리 파일 형식으로 기록되는 스냅샷 파일을 각각 저장하고 관리하며, 상기 메모리의 로그 버퍼로부터 상기 블록 디바이스로 기 설정된 단위 시간마다 주기적으로 플러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p>	명백한 오기	

2020.09.16.

특허청

융복합기술심사국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심사관 박미정

박미정



<< 안내 >>

【 직권보정 안내 】

1. 직권보정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출원인은 특허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특허료를 납부할 때까지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출원인이 직권보정 사항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면 특허법 제66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그 특허결정도 함께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요약서에 관한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만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직권보정 사항은 등록공보에 함께 기재됩니다. 【 등록료 납부, 전자등록증 발급 서비스 개시, 특허기술상신청 안내 및 등록공보 확인 등 】
 1. 등록료 납부안내
 - o 특허료 납부예정금액(1~3년차분) : 513,000 원(1~3년차분을 정상납부기간내에 납부하는 경우), 256,500 원(50% 감면대상자인 경우), 153,900 원(70% 감면대상자인 경우)
 - o 특허료의 정상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추가납부하거나, 특허료납부기간 중 특허료의 변경요인이 있을 때에는 위 납부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o 자세한 안내는 아래의 첨부파일(특허료 납부 안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출원인은 이 특허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다만, 특허법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기간)에 분할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3. 2018. 7. 1. 설정 등록부터 전자등록증 발급이 시행되었습니다. 특허로(<http://www.patent.go.kr>)에서 「전자등록증 신청」을 사전에 하거나, 납부서(특허권 등의 등록형 시행규칙 서식 제25호)에 등록증 수령 방법을 전자문서 수령으로 선택하면 「전자등록증 수신함」을 통해 전자등록증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자등록증을 사전에 신청하지 않고 동봉된 납입고지서로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면 기존과 동일하게 서면 등록증으로 발급됩니다.
 4. 내국인은 매년 2월, 8월경 특허기술상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jsp/kiponet/mp/patentprize/index.htm>)에 공지된 신청기간에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발명(고안)에 대해 특허기술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o 신청기준일(상반기의 경우 매년 2월 1일, 하반기의 경우 매년 8월 1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정등록된 발명(고안)
 - o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 또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위하여 유효성·안전성 등의 시험이 필요한 발명으로서 신청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품을 출시하여 매출이 발생한 발명
 5. 출원인은 설정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만, '12.3.15. 이후의 출원이고,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특허출원일로부터 4년과 출원심사 청구일로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된 경우에 한 함)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 ※ 등록공보는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신 후 7일 전후로 특허청 홈페이지(특허마당→인터넷공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관의 직권 보정사항이 있으면 평균 등록일로부터 약 30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 「특허로」 고객센터에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담당 심사관 지정 알림, 마감기한 알림 등 각종 민원처리 사항을 이메일과 휴대폰(SMS)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 ※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인식제고를 위해 무료 온라인 교육서비스 (www.ipacademy.net)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 위에서 안내한 후속 절차 또는 신청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특허고객상담센터 ☎ 1544-8080로, 이 통지서 결정 내용에 대한 사항은 특허청 ☎ 042-481-8373(담당심사관 박미정)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특허청 및 특허청 직원은 법령에서 정한 법정 수수료 외에 출원인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일체의 금품·향응 및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나 사례를 인지 또는 목격하였을 경우,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공직비리신고센터(특허청-민원/참여-국민신고-공직비리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허청)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국민의 소중한 지식재산,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책임지고 지키겠습니다!